

6. 住宅建設基準等に 關한 規程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2~20號 1992. 3. 10

개정 이유

주택단지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수련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토록 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주요 골자

주택단지안에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수련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토록하며, 기타 현행규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내용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가. 주택단지안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
- 나. 화재시 발코니를 통한 피난방안 강구
- 다. 고가수조등 저수시설에 내식성재료 사용
- 라. 주택을 띄어 건설하는 대상시설(공장등) 일부 완화
- 마. 초고층아파트에는 곤도라 대신 화물용승강기 설치
- 바. 아파트단지의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기준개선
- 사. 기타 현행기준의 미비사항 확충·보완

주택단지안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(신설)

(안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)

■ 내용

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범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시키고, 일정규모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단지규모에 따라 적정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함.

-300세대이상인 단지에는 청소년수련실등을 주민공동시설안에 설치

-5,000세대이상의 대규모 단지에는 생활체육시설과 함께 청소년회관등의 청소년수련시설도 포함하여 설치

※ 청소년수련시설 : 청소년회관·청소년수련실·심신수련장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수련등을 위한 설치

(청소년육성법)

■ 기대효과

태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주택단지안에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용도를 증진

화재시 발코니를 통한 피난방안 강구(신설)

(안 제14조제1항)

■ 내용

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·확산등 유사시 현관방향의 피난로가 막힌 경우에도 이웃집으로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비상구를 설치하거나, 벽체를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구조로 하도록 함.

■ 기대효과

공동주택에서 화재등 위급사태 발생시 안전하게 이웃으로 피난

고가수조등 저수시설에 내식성재료 사용(신설)

(안 제43조제5항)

■ 내용

공동주택의 저수조(고가수조 및 지하저수조)는 부식되거나 수질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재

료로 사용하도록 함.

■ 기대효과

저수조(고가수조 및 지하저수조)의 부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

주택을 띄어 건설하는 대상시설(공장등)일부완화(개정)

(안 제9조제2항)

■ 현 행

공해·이전계획여부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으로부터 확실히 50미터 이상 띄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음.

■ 개정내용

공해공장으로 부터는 공동주택을 50미터이상 띄어 건설하도록 하되, 공해공장이 아닌 일반공장으로 부터는 50미터이상 띄우지 않아도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전촉진지역·제한정비지역내의 이전계획(이전신고·이전 명령)이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위 제한 규정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■ 기대효과

택지의 효율적인 이용

초고층아파트에는 곤도라 대신 화물용승강기 설치(개정)

(안 제15조제3항)

■ 현 행

7층이상인 아파트에는 이삿짐등 화물운반시설로써 인양기(곤도라) 또는 화물용승강기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■ 개정내용

초고층아파트(16층이상)에는 이삿짐등 화물운반시설로써 인양기(곤도라) 설치를 금지하고 화물용승강기만을 설치하도록 함.

■ 기대효과

초고층아파트에 있어 이사짐등 화물운반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운반효율을 제고

아파트단지의 쓰레기수거시설 설치기준개선(개정)

(안 제38조)

■ 현 행

공동주택에는 쓰레기투입구설치를 원칙으로 하되, 지역별로 시장·군수가 별도로 쓰레기 수거방식을 정하는 경우에는 옥외 쓰레기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■ 개정내용

공동주택에는 옥외 쓰레기수거용기설치를 원칙으로 하고, 롤온박스설치등 쓰레기분리수거 및 기계화수거가 가능한 수거방식으로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
■ 기대효과

주택단지안의 쓰레기분리수거방식 정착

주민운동시설은 주택과 일정거리 유지(신설)

(안 제53조제4항)

■ 내 용

농구장·테니스장등 옥외운동시설은 주변에 상록수를 식재하는등 차폐시설을 설치하고, 또한 주택으로부터는 5미터이상 거리를 두게함.

■ 기대효과

옥외 주민운동시설의 이용에 따른 소음발생과 주변주택의 내부투시등 주거환경 및 사생활침해를 방지

침수우려지역 주택단지의 변전실은 지하층등에 설치금지(신설)

(안 제30조제3항)

■ 내 용

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주택단지의 주된 수·배전시설등의 전기시설을 침수에 대하여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.

■ 기대효과

상습침수지역등 저지대에 건설되는 주택단지에 있어 수해등 침수시 단전 및 누전등의 피해를 방지

주택자재생산업 등록기준일부개선(신설)

(안 별표3)

■ 내 용

알미늄창호 및 합성수지창호는 창호자재(틀재)생산업에 대하여도 등록기준을 신설하고, 창호의 가공·조립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구분하여 정함.

■ 기대효과

알미늄창호 및 합성수지창호는 가공·조립과정뿐만 아니라 창호자재(틀재)생산과정에 대하여도 등록기준에 의하여 규격 및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주택의 주요부분인 창호의 품질을 향상

3)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: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